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3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강승규 · 김미애 · 박상웅
고동진 · 박충권 · 김재섭
이철규 · 김소희 · 김위상
박준태 · 유용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

설).

법률 제 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보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 ⑥ (생 략)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 보수를 할 수 있다.	⑦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 로·철도·교량 등 하천에 설 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 보수</u>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